

산업보건규제와 안전배려의무



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
김 수 근

경제 관련 단체들은 최근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와 법규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규제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혁과 시정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이에 산업보건규제와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산업보건규제의 이론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하면, 생소하지만 안전배려의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배려의무는 사회적인 세력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합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용을 둘러싼 공공의 질서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물건의 급부와는 달리 근로자의 신체와 분리될 수 없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통제아래에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그를 위하여 장치·기구 등을 사용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에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하는 것이 안전배려의무이다. 비록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다양한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있다.

경제 관련 단체들이 건의한 주요내용 중에 근골격계질환을 포함한 근로자의 유해요인 조사, 특수건강진단 및 근로자 준수 의무 개정사항, 오는 7월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인 GHS를 반영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시행시기를 연장해 줄 것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특수

건강진단을 제외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보건에서 주요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업무상 질병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많은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급속히 증가하던 업무상 근골격질환의 증가 속도가 주춤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최소한의 조치로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요인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최근에 심각한 화학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분류체계에 근거하는 MSDS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개별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작성 실무에 관한 준비를 정부가 도맡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과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의 선진화는 현재 우리나라 산업보건에서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경제 관련 단체에서는 규제 개혁과 시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산업보건규제에 이론적 근거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동안 명령통제방식과 정부의 규제독점으로 인한 폐단은 많이 거론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자주 대응형 규제방식과 정부독점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근로자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산업보건규제의 대상은 사업주이며, 따라서 사업주가 아직까지는 규제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으로 성숙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사업주의 비용부담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과 노사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등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의 기본이 되는 유해요인조사를 시정해야할 사유로 지적되었는데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실행해야 할 방식과 규모로 시행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가 규제라기보다는 효과적인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수많은 화학물질이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최근의 심각한 화학중독 사망사고 등을 볼 때에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체계, 특히 위해성 정보전달은 매우 중요한 산업보건 과제이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해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MSDS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일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편리하게 MSDS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편집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한 합리적인 분류체계에 따른 MSDS제도의 도입은 빠를수록 바람직한 것이며, 정부가 개별 사업 중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고려할 때에 이를 부담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전배려의무에 대해서 현대적 의의가 있는 독일민법 제618조 제1항을 보면 사업주는 노무급부의 성질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또는 자기의 명령이나 지휘 아래에서 노무급부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노무 수행이 제공되는 장소·설비 및 기구를 안전하게 설치·유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의무는 근로계약관계의 내재적 성질상 당연히 요청된다고 하였다. 즉 안전배려의무는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장소, 설비 등의 위험성과 이것에 대한 안전배려의 필요성이 사실상의 관계가 있으면 발생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는가가 문제된다.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나 GHS에 따른 MSDS제도 도입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작업으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이행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항이지 과도 규제의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산업보건규제가 명령통제방식에서 획일적인 규제로 현장에서는 비효율적이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것이 규제완화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저 규제 상태인 것을 감안하고,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개혁과 시정에 대한 요구가 되었으면 바람직하겠다. 🍷